

이은림 의원 (환경수자원위원회, 국민의힘)

□ 질문내용

- 현재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(2022.1.)에 따르면,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시 신청단체의 수탁신청 의결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(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)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.
-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같이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, 지침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제출서류를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,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사회적협동조합이 시립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시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중 어느 것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의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.

□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

- 사회적협동조합이 시립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지침 취지상 사단법인과 같이 ‘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’ 입니다.
 - 수탁신청시 법인의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통지서와 회의록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수탁신청하였는지를 확인 하는데 있습니다.
 - 따라서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33조(이사회 의결사항)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사업계획의 ‘작성’ 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29조(총회 의결사항)에는 총회에서 사업계획을 ‘승인’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시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할지 여부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- 현 지침상 사회적협동조합이 누락된 부분은 23년도 지침 개정시 반영하여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

작	기관명 (부서명)	직 위	성 명
성	서울특별시 (복지정책과)	법인시설팀장	김형진
	☎2133-7325	주무관	조태순
자	작성일 : 2022.12.21.(수)		